

자립



청소년한부모
자립지원



자산형성지원

취업 및 창업교육지원

여성새로일하기센터

국민취업지원제도

개요

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, 직업교육훈련,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
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

지원내용

상담	직업교육훈련	취업연계	사후관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별상담 · 집단상담 프로그램 · 취업정보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기술, 기업맞춤형, 취약계층과정 등 교육 · 새일역량교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구인·구직 매칭 · 인턴십 연계 · 동행면접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취업자 상담 및 멘토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장적응교육, 멘토링 등 ·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평등교육, 환경개선지원 등

[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과정]

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: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, 구인업체 발굴, 취업알선,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

집단상담 프로그램 :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·구직기술 향상,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

직업교육훈련 :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

새일여성인턴 :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과 해당인턴에게 1인당 최대 380만원 지원

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: 구인·구직자의 취·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

신청절차 및 방법

새일센터 방문 및 전화 문의(1544-1199)

필요서류

프로그램 대상별 상이하여 문의 필요

문의

여성새로일하기센터

누리집 <https://saeil.mogef.go.kr/>

문의전화 1544-1199



본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출력

닫기